

의안번호	
의 퇴 인	전진숙의원
회 답 일	2025.7.17.
추계번호	25C3615
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9조제1항 (포상금 확대)	○ (제1항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1. (전략) <u>축산물에 대해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</u> 3.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<u>영업을 계속한 자</u>	재량규정

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. 1. 식품,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. 제품명, 내용량 및 원재료명; 나.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; 다.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; 라. 제조연월일,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; 마.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,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. 기구 또는 용기·포장 가. 재질; 나.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; 다.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; 라.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·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. 건강기능식품 가. 제품명, 내용량 및 원료명; 나.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; 다.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; 라. 섭취량,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; 마.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; 바.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; 사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; 아.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,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·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·가공·소분〔小分〕: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〕·수입·포장·보관·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	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8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·제조방법·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7조(허가의 취소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,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, 영업소 폐쇄(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--	--	--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9조제1항 (포상금 확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포상금 확대(안 제39조제1항)

-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정불량축산물 신고포상금은 2025년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액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개정안에서는 축산물에 대하여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원재료명의 표시, 기구 및 용기·포장 정보,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등을 위반한 자,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한 광고를 한 자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를 위반한 자를 신고·고발 및 협조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주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
 - －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5년 7월 14일 기준 축산물에 대한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건은 2025년 1~7월 30건이며,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건은 2025년 1~7월 중 1건임

[표 1]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,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7조제1항 위반 현황(2022~2025.7)

(단위: 건)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.1.1~7.14.
축산물에 대해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	101	95	120	30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7조제1항	—	—	—	1

자료: 식품의약품안전처(식품행정통합시스템 2025.7.14. 조회 자료)

- 개정안에 따라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할 경우 포상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향후 포상금 위반 건수, 지급액 등 구체적 정보를 파악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박선아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741	sunapark@assembly.go.kr